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양진오 의원

2. 찬 성 자: 김근한 의원 외 7인

### 3. 제안이유

- 구미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확립을 위한 농민들의 로컬푸드 인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GAP 인증과 동일 수준의 검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함.

### 4. 주요내용

- 가. 오탈자 수정(안 제21조제2항)
- 나. 로컬푸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안 제21조제3항)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6.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로컬푸드 인증 업무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지정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 검토 결과,

- 안 제21조제3항에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로컬푸드 인증 절차를 위한 분석 및 심사 수행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였음.
- 경상북도 내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은 4개소<sup>1)</sup>이나 관내 소재 기관의 부재로, 각종 인증 절차와 2년 주기의 유효기간 갱신 관리 등에서 관내 농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로컬푸드 인증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면, 외부기관 의존도를 낮춰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증비용 절감, 검사 기간 단축 등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로컬푸드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청농가에 대한 교육과 현장 기술 지도 등 관련 부서의 행정적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

※ 전국 54개소 (경북 4개소 : 안동, 경산, 성주, 칠곡)